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1257 법인지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

피 고 1. ○○광역시 ○구청장
2. ○○특별시 ○○구청장
3. ○○특별시 ○○구청장
4. ○○시 ○○○구청장
5. ○○시장
6. ○○시장
7. ○○시 ○○구청장
8. ○○시 ○○구청장
9. ○○시장
10. ○○시 ○○출장소장
11. ○○광역시 ○구청장
12. ○○광역시 ○구청장
13. ○○광역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¹⁾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 수출입과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 등(이하 '이 사건 연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1) 원고는 소장에 첨부한 별지 목록 중 피고 ○○특별시 ○○구청장 및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의 처분일을 '부작위'라고 표시하였으나, 원고가 2021. 4. 29.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경정청구세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피고들이 원고의 경정청구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여 기망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각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경과된 날인 2021. 6. 30.이 그 각 간주경정거부처분일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위 각 '부작위' 부분을 간주경정거부처분일인 '2021. 6. 30.'로 정정하여 판단한다.



나. 한편,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종전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방식이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독립세 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다.

다. 원고는 2014 및 2015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이월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각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중 별지 1 목록 '경정청구액'란 기재 각 세액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연구비 등이 이월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별지 2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들은 별지 3 피고들의 처분사유 각 기재와 같은 사유를 들어 별지 2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9. 13.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3.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사 제1호증, 을자 제1, 2호증, 을카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5조(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부여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고, 원고는 이 사건 연구비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령에 따른 세액감면 외에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비록 종전 부가세 방식이었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독립세 방식인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된 취지가 세액감면·공제 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세액감면·공제 혜택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는 종전 규정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같이 이월공제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개정 경과

가) 구 지방세법 제85조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4호에서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의 표준세율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5조는 법인세액을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모두 공제한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132조 제1항은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하지 않되, 제144조는 제10조에 따라 공제한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개정 지방세법 제85조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03조의19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03조의20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함으로써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게 되었고,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 따라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인지방소득세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 공제·감면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세액 공제·감면을 배제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으로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 종전에는 세액 공제·감면을 받았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세액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



다.

그리고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단서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사건 경과규정인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및 이 사건 경과규정의 관계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단서는 이를 반영하여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고 납세의무자에게 보호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의 특별규정인 이 사건 경과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닌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의 의미 및 '불리한 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인세액 산정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와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관한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가 이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에 의하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 당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부과하려면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등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규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 등과 같은 법인세액을 감면하는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만 가능하였고, 이와 같이 최종적인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의 과세표준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규정 등을 모두 유기적 일체로서 결합하여 적용하여야 비로소 그 최종적인 세액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법인세액 산정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와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관한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는 모두 구 지방세법 관련 조항과 일체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확정하는 규정들로서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종전 규정', 즉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지방세법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표준 규정과 세액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한 이후에 확정된 법인세액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32조, 제14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비 등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최저한세액의 제한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를 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다음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 지방세법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4. 1. 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존재하던 세액감면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들로서 지방소득세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존재하던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지방세법 개정 이전인 2013년까지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지출하고도 최저한세액의 제한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이를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지방세법의 위와 같은 개정은 원고에게 불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

위와 같은 관계 규정과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그 원인행위를 완료하여 법적 지위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그 원인행위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및 제144조에 의하여 최저한세액의 제한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다음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연구비 등이 이월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되기 이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는 제132조의 최저한세액 제한으로 인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다음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해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액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이 사건 연구비 등 중 일정금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의하여 향후 일정기간 법인세 및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던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있어 최저한세액 등의 제한으로 감면받지 못한 연구비가 추후 공제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추후 세액 공제·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의 공제·감면은 연구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확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



의 신뢰에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이월공제 가능성에 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구 지방세법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으로 규정하는 한편, 연구비 등에 대하여 최저한세액 등의 적용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 등에서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5년간 일정 금액이 공제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등 참조), 법인세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이라도 기업에게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을 지출할 유인 또는 동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가 단순한 기대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2015 및 2016 각 사업연도에 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은 어디까지나 개정 전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구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 계산에 관한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대한 세



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경과규정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고 납세의무자에게 보호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이 사건 경과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닌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가 이월공제 대상을 '법인세'라고만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32조, 제144조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도 5년이라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이월세액공제가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규정은 모두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 지방세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넘어서서 이미 원인관계가 완료되어 신뢰가 형성된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까지 배제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최저한세액 등의 적용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 등에 의하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이는 기업에게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을 지출할 유인 또는 동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 그와 같은 이월공제에 관한 신뢰가 단순한 기대이익이라거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판사 김○○

판사 고○○



별지 1

목 록

(금액 단위 : 원)

순번	피고	처분일	경정청구세액
1	○○광역시 ○구청장	2021. 6. 24.	66,819,310
2	○○특별시 ○구청장	2021. 6. 18.	4,027,360
3	○○특별시 ○구청장	2021. 6. 30.	491,850
4	○○시 ○○○구청장	2021. 6. 22.	24,100
5	○○시장	2021. 6. 24.	12,210
6	○○시장	2021. 7. 2.	354,240
7	○○시 ○구청장	2021. 6. 28.	25,770
8	○○시 ○구청장	2021. 6. 30.	256,180
9	○○시장	2021. 6. 25.	57,410
10	○○시 ○출장소장	2021. 6. 29.	254,100
11	○○광역시 ○구청장	2021. 6. 22.	1,072,770
12	○○광역시 ○구청장	2021. 6. 28.	2,574,020
13	○○광역시 ○구청장	2021. 6. 22.	32,480



별지 2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금액 단위 : 원)

순번	피고	사업장	경정 청구일	처분통지 도달일	2015년 청구세액	2016년 청구세액
1	○○광역시 ○구청장	A 주식회사	2021. 4. 29.	2021. 6. 24.	58,057,440	8,761,870
2	○○특별시 ○○구청장	A 주식회사 ○○지점	2021. 4. 29.	2021. 6. 18.	-	4,027,360
3	○○특별시 ○○구청장	B ○○점	2021. 4. 29.	통지 없음	491,850	-
4	○○시 ○○○구청장	B D점	2021. 4. 29.	2021. 6. 22.	-	24,100
5	○○시장	C ○○점	2021. 4. 28.	2021. 6. 24.	-	12,210
6	○○시장	B ○○북부점	2021. 4. 28.	2021. 7. 2.	296,140	58,100
7	○○시 ○○구청장	B E점	2021. 4. 28.	2021. 6. 28.	-	25,770
8	○○시 ○○구청장	B ○○점	2021. 4. 29.	통지 없음	214,160	42,020
9	○○시장	B ○○점	2021. 4. 29.	2021. 6. 25.	-	57,410
10	○○시 ○○출장소장	B ○○점	2021. 4. 28.	2021. 6. 29.	212,420	41,680
11	○○광역시 ○구청장	A 주식회사 ○○지점	2021. 4. 29.	2021. 6. 22.	1,072,770	-
12	○○광역시 ○구청장	A 주식회사 ○○지점	2021. 4. 29.	2021. 6. 28.	2,258,430	315,590
13	○○광역시 ○구청장	B ○○점	2021. 4. 29.	2021. 6. 22.	-	32,480
합계					62,603,210	13,398,590



별지 3

피고들의 각 처분사유

순번	피고	처분사유
1	○○광역시 ○○구청장	<p>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됨에 따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세 체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제103조의22 규정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등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p> <p>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4호, 제94조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2020.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적용요건인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충족되지 않습니다.</p> <p>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p>
2	○○특별시 ○○구청장	<p>법인세 감면세액 10%의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적용여부에 있어, ‘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수 신장’으로 들어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알 수 있음. 해당 건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 개정 과세표준 적용기준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단서에 법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도 “개정세법 시행 이후 과세기준일 등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15조와 같은 일반적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두5101 판결), 대법원은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 원인행위 시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조세감면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일 뿐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두12552 판결 등 다수), 종전규정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를 신뢰하더라도 영구적 조세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에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일 뿐 마땅히 보호할 정도는 아님.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불승인 처리함.</p>
3	○○시 ○○○○구청장	<p>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됨에 따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2014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과세체계를 적용해야 하는 점,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p>



		특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4	○○시장	1. 종전 부가세 방식의 법인세의 공제·감면된 총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공제·감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내지 세액감면 규정은 없었고,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규정의 ‘종전의 규정’은 당해 법률의 개정 전 구법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까지 포함한 것은 아님. 2. 2014. 1. 1.부터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을 종전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세의 공제 감면을 받았거나 공제를 예상한 사실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구 지방세법에서 감면한 사실이 없고 이월공제를 규정한 바 없어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될 사안은 아니므로 청구하신 2016년 귀속 사업년도 경정 불가함.
5	○○시장	*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 거부 - 2014. 1. 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기에 2014년 이후 법인소득은 개정된 과세체계를 적용해야 하며, -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이월세액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월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함.
6	○○시 ○○구청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개발비) 등 감면 적용으로 본세인 법인세가 감면결정되었다 하더라도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개정된 이후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한 점과 구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항이 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뢰보호의 대상에 원고의 사례가 해당하기 어렵기에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
7	○○시장	2014년 이후 사업년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지방세 관계법령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규정이 개정 전후로 규정이 없는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 인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8	○○시 ○○ 출장소장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2014 사업년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개정 과세표준의 적용은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를 따르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



		가 요청한 경정청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9	○○광역시 ○구청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등에서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소득세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며,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10	○○광역시 ○구청장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2014년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며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본 경정 청구를 거부’함.
11	○○광역시 ○구청장	법인세의 부과세 형태로 징수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2014년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령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정하지 아니함.



별지 4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 세 표 준	세 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3억 9천 800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 원 초과	65억 5천 800만 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1조(신고납부)

-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 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text{분의 } 3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times 2$$



분의 1

-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6[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63조의2 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 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



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을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6조의6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을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



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text{분의 } 20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율} \times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 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 ②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



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끝.